

비정년트랙교원 책임강의시간에 관한 지침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17.11.2		16		
2	2021.4.26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비정년트랙교원 책임강의시간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본 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의무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기본강의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강의시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학기별 책임시간은 <표1>과 같다.

<표 1>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책임시간<개정 2017.11.2>

구분	임용시기별	책임시간(학기별/주당)
채용형산학협력중점교수	2017년 3월 이전 임용	6시간
	2017년 3월 임용부터 적용	
교육중점교수	2017년 3월 이전 임용	12시간
	2017년 3월 임용 부터 적용	9시간
교육중점교수 (어학담당 외국인어학교원)	2017년 3월 이전 임용	15시간
	2017년 3월 임용 부터 적용	12시간
연구중점교수	2017년 3월 임용부터 적용	3시간

제3조 (책임시간의 변경) ① 제 2조의 책임시간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강의료 지급 규정 <별표2>에서 정의한 연구 또는 교육 우수 교원의 경우에는 책임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4.26>

제4조 (초과강의료) 학기별 강의담당시간이 책임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강사료를 지급하며 초과강사료의 지급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7년 11월 2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